
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1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이호대, 김경우, 채인묵,
강동길, 정재웅, 이승미,
이병도, 이준형, 경만선,
봉양순, 권수정, 임만균,
신정호, 장인홍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」의 모호한 문구를 바로잡고, 조례상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학부모”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시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교육청”으로,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담대상자 등) ① 상담대상자는 <u>서울특별시교육감</u>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<u>학부모</u>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상담방법)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<u>서울시교육청</u>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<u>성명·연락처·상담내용</u>을 기재하여 신청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상담변호사 지정) 상담변호사는 <u>서울특별시교육청</u> 법률고문 중에서 <u>서울특별시교육감</u>이 지정한다.</p>	<p>제2조(상담대상자 등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학생의 학부모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상담방법) ① ----- ----- -- <u>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상담변호사 지정) ----- --- <u>교육청</u> ----- ----- <u>교육감</u>----- -----.</p>